

■ 운영규정 개요 (입소정원: 9명)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종사자 근무 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 호 사		요양보호사		조 리 원	
법정인력	현 원	법정인력	현 원	법정인력	현 원	법정인력	현원
1	1	1	1	3	4	0	1

2. 주,야간/평,휴일 종사자 인력

평 일		휴 일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시설장,간호사 요양보호사,조리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시설장,요양보호사 조리원	요양보호사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요 양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1 일당	72,460	67,250	62,000
본인부담금(20%)	434,880	403,500	372,000
본인부담금(12%)	260,930	242,100	223,200
본인부담금(8%)	173,950	161,400	148,800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식 재료비	일 반 식	끼니당 : 3,100원/간식비: 700원	1일 10,000원
	경 관 식	- 끼니당: 3,400원/간식비:800원	1일 11,000원
이미용비,교통비		상황발생시 실비 적용	이,미용 시설 기본 제공
상급 침실료		1인실(월15만원), 2인실(월10만원)	지역주민 감면

시설의 규모, 설비

시설규모					
대지	999㎡	건 물 면 적	249.88㎡	소유형태	자 가

시설현황									
침실	특수침실	사 무 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전 용 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5	1	1	1	1	1	2	3	2	1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화 재 보 험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	화재 및 붕괴등의 손해(가스포함)
배상책임보험 (영업,전문인)		영업배상 및 전문직업배상 (2021.11.04.~2031.11.04.)